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0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보조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간소화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과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의 제출규정을 삭제함.
- ※ 서울, 대전, 전남, 경북은 폐지

의안전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공포한 창조주 · 참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제6호·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p>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 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p>제5조(보조신청)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5. ----- <p><삭 제></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5. -----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 8. ----- ----- <p><삭 제></p>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①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